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352호

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(일몰) 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60(2023. 6. 22.)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8일
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

구 분	구역명	위치	구역면적(㎡)	해제(일몰) 기한 (조합설립인가 신청기한)	비고
기 정	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	49,397	2026.6.22.	
변 경	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	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	49,397	2028.6.22.	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(일몰) 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9)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(☎02-2127-4676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